

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!
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“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”에 대하여
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서울시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

막대한 예산 부담이 드는 공영주차장 건설의 대안으로

종교시설 등의 유허 주차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는

‘부설주차장 공유사업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○ 그러나 현행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는

종교단체가 신규 취득한 주차장 부지를 3년 이내에 주민에게 개방하면,

과세 당국은 이를 종교 행위가 아닌 ‘고유목적 외 사용’으로 간주하여

면제했던 세금을 전액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○ 이는 서울시가 시설 개선비까지 지원하며 개방을 독려하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기모순적 행정이며,
자발적인 사회공헌에 나선 종교단체의 선의를 처벌하는 불합리한 규제입니다.

○ 이에 본 건의안은,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익적 사용의 경우,
이를 고유목적 사용으로 간주하여
취득세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
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이번 건의안이 채택되어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면,
막대한 예산 절감은 물론,
닫혀있던 민간의 주차 공간이 지역사회의 공유 자산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건의안의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